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 유 찬 중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38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2월 13일

발 의 자 : 유찬중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장흥순, 김정태, 이윤희  
우창운, 유동균, 김제리,  
박진형, 박운기, 김광수(도봉)  
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2017.12.26.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“상생협약 체결”과 “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”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, 상생협약은 개별당사자의 임의적 사항으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상생협약 체결의 구체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며,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(안 제16조제2항).

나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은 생활환경 개선, 공동체 회복,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하고,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, 구청장, 도시재생지원센터, 주민협의회, 마을기업 등으로 정함(안 제26조의2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(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”를 “부합하고, 법 제 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)

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.

1.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
2. 주민의 건강, 안전, 이익을 보장하며,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
3. 교육, 안전, 복지, 의료, 환경,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

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

4.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시장, 구청장

2.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

3. 제3조의 “주민협의체”, “사업추진협의회”

4.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“마을기업”

5.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『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』 제3조제 2호의 “사회적경제기업”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의2 개정규정은 2018. 6. 27.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<u>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16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부합하고,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 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6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)</u></p> <p>① <u>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"공익 목적의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</u></li> <li><u>2. 주민의 건강, 안전, 이익을 보장하며,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</u></li> <li><u>3. 교육, 안전, 복지, 의료, 환경,</u>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	<p><u>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</u></p> <p>4.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</p> <p>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장, 구청장</li> <li>2.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 센터</li> <li>3. 제3조의 “주민협의체”, “사업추진협의회”</li> <li>4.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“마을기업”</li> <li>5.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『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』 제3조제2호의 “사회적경제기업”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의2 개정규정은 2018. 6. 27.부터 시행한다.</p>